



일본 소비자금융에서 배워야 할 5가지, 배우지 말아야 할 5가지

201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주최:한국대부금융협회

일시:2010년 11월 3일

발표:와세다대학교 크레딧 비즈니스 연구소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

배우지 말아야 할 5가지

1.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낮은 상한금리의 설정
2. 총량규제의 도입
3.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는 정책 논의
4. 지정신용정보기관제도의 도입
5. 대금업체의 늦깎이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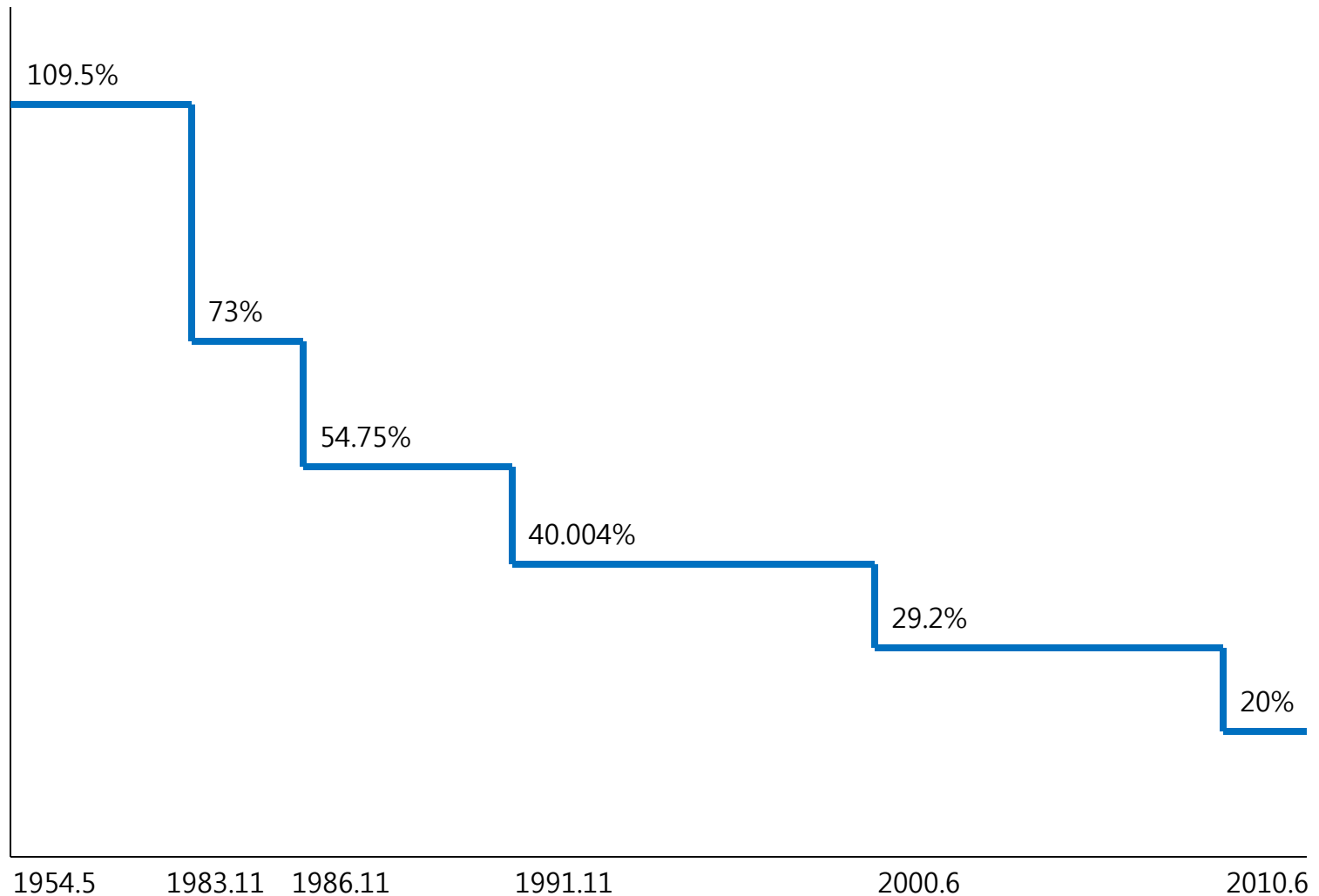
1.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낮은 상한금리의 설정

- 개정 대금업법으로 인해 출자법의 상한금리(29.2%)가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인(원금 10만엔 미만은 20%,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은 18%, 100만엔 이상은 15%)까지 인하됐다.
- 대형 대금업체가 이용하고 있는 시중금리를 크게 밑도는 상한금리를 설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

- 다중채무자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채무자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금리의 상한 규제는 도입해야만 한다. 또한 초과수요가 되어 대출이 불가능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세이프티넷을 공적기관인 정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마련하여 사회정책으로 구제를 해야 한다.
- 금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을 해야 하며, 대출 금리를 규제하는 행위는 시장원리에 위배된다.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규제를 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 인플레이션 시에 상한금리를 20%로 설정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제한하게 된다.

출자법상의 상한금리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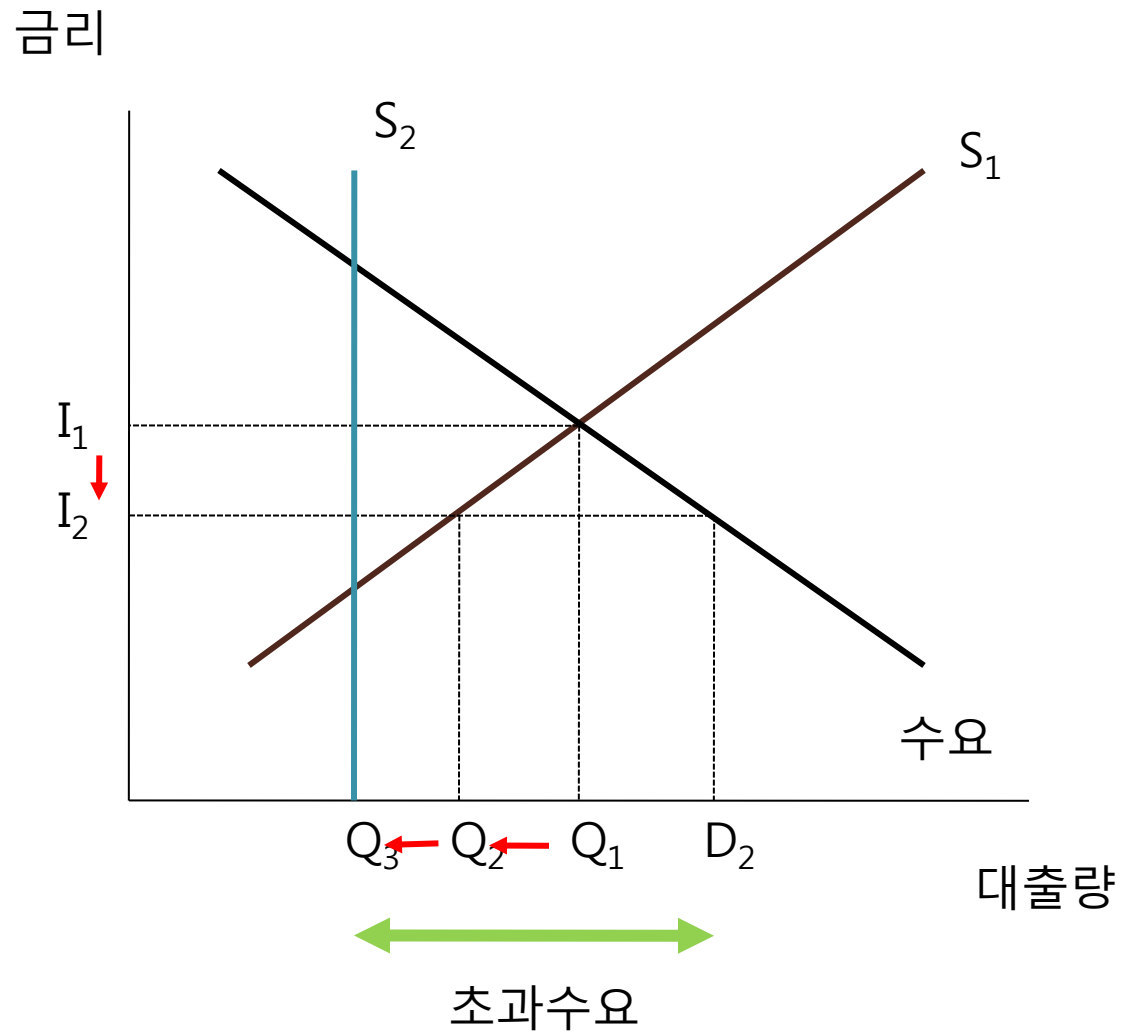
2. 총량규제의 도입

- 개정 대금업법으로 인해 개인고객의 대출 총액이 연 소득 등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되었다.
- 개인의 사업자금융 대출도 총량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 모든 전업주부를 “수입이 없는 자”로 일률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업주부가 대출을 받을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동의서가 필요하게 되었다(전업주부의 일상적인 가사채무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

- 다중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함으로써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의 일정 비율(1/3) 이상은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더 많은 편이다. 예를 들면 젊은 층의 직장인이 두, 세 곳에서 조금씩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와 상여금을 받아 상환을 하는 경우 등.
- 사업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긴급자금을 대출하려고 하는 개인기업 중에는 매출액이 경영자의 개인소득을 훨씬 넘는 경우가 많다.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제한을 하게 되면 단기 대출이 어려워져 자금유통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

금리와 총량규제에 의한 대출량의 변화



대금업체에 의한 자금 공여 기능이 크게 저하(1)

- 대금업시장이 큰 폭으로 축소하여 자금 공여 기능이 크게 저하
- 2007년 4월과 2010년 8월을 비교해보면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잔고의 경우 14조 7,912억 엔에서 8조 4,951억 엔으로 감소했다(월간 대출금액의 경우는 8,406억 엔에서 2,952억 엔으로 감소) 3년 반 동안 대출잔고는 약 6조엔, 43%가 감소했으며, 월간 대출금액은 약 5,400억 엔, 65%가 감소했다(일본대금업협회 월차 통계 자료)
- 사업자 대상 무담보 대출은 5,568억 엔에서 3,408억 엔으로 감소(월간 대출금액은 509억 엔에서 403억 엔으로 감소)했으며, 사업자 대상 보증대출은 7,183억 엔에서 529억 엔으로 감소했다(월간 대출금액은 613억 엔에서 16억 엔으로 감소)(일본대금업협회 월차 통계 자료)
- 등록 대금업체 수의 경우도 2007년 3월말에 11,832사였던 것이 2010년 8월에는 2,948사까지 감소했다(금융청 대금업 관련 통계 자료)
- 대금업협회 회원에 의한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의 성약율은 2006년 9월의 42.1%에서 2009년 3월에는 26.8%까지 저하되었다(일본대금업협회)

대금업체에 의한 자금 공여 기능이 크게 저하(2)

- 과불금 반환 청구가 급증

2009년도의 대형 대금업체 4사의 과불금 반환 실적은 이자 변제액과 원금 상계액을 합하여 총 5,194억 엔이었으며, 2009년도 말의 과불금 반환 손실 충당금 잔고는 9,859억 엔이었다.

- 과불금 반환 청구 및 시장의 장래성에 대한 금융기관이나 투자가의 우려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으며, 대금업체의 사업 계속성 자체가 힘들어졌다.

- 2007년 9월에 크레디아가 민사재생법을 신청하여 수리되었으며, 2009년 9월에는 아이후르가 사업재생 ADR을 신청, 2010년 9월에는 다케후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장축소가 자금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1)

- 은행과 상한금리가 동일하게 됨으로써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자금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여라고 하는 대금업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 총량규제 도입으로 인해 파산 우려가 적은 자금수요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시장축소의 영향은 경제적 약자, 그 중에서도 특히 수입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나타난다. 대출을 거절당할 비율이 높은 자금수요자는 20대, 연 소득 300만 엔 이하,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영세기업 근로자, 파견사원, 아르바이트, 직종별로는 운수업, 건설업,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이었다(도우모토, 우치다)
- 금융청의 조사(2010년 4월)에서는 대금업체의 72.0%가 배우자 대출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47.4%가 개인사업주에게 대출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3년간 대출 경험이 있는 자 중 소비자금융에 대출잔고가 있는 대상자 중에서 총량규제에 저촉되는 사람은 42.1%였다. 이는 전체 대출자수(복수 업체에게 대출을 받은 고객은 중복 카운트)인 2,288만 명중 961만 명에 해당하며, 총 대출금액 12조 5,363억 엔 중 5조 831억 엔에 해당한다.
- 총량규제에 저촉되는 이용자의 비율은 일본대금업협회의 조사에서는 50%, 도우모토와 우치다의 조사에서는 47%였다.
- 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의 12.9%가 사업성 자금의 차입처로 대금업체를 이용한다(일본대금업협회) 이 중 대부분이 사업자 대상 대출이 아닌 소비자 대상 무담보 대출이다.
- 사업자 대상의 경우, 200만 엔 전후의 소액 수요나 무담보 무보증 니즈, 결제대금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여 금융과소화(지방에서부터 논뱅크 철퇴)가 진행되었다.

시장축소가 자금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2)

- 어느 곳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 일본대금업협회의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민원 상담 중 상담자의 10명 중 한 명꼴이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인데, 건수 면에서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 금융청의 조사에서는 지난 3년간 대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3.0%였으며, 총량규제 저축자의 경우는 6.5%였다고 한다.
- 일본대금업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개인의 경우 이용자의 약 12%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3%는 아직도 이용 중이라고 했다. 자금의 사용 용도는 생활비에 충당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등록 대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한다고 한다. 경영자나 개인사업주의 경우는 이용자의 약 11%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4%는 아직도 이용 중이라고 한다.
- 도우모토와 우치다 교수의 조사 연구에서는 불법사금융업체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실제로 이용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등록 대금업체로부터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불법사금융업체에 접촉을 하거나 대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자금이 필요하게 된 영세사업자의 긴급 자금 대출이었으며, 신용카드 현금화와 같은 불법사금융과 비슷한 수법을 이용하는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와세다대학 소비자금융서비스연구소에서 인터넷상의 불법사금융 상담사이트에 게재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액 자체는 많지 않지만 대출을 강요하거나 수수료 및 보증료를 징구하거나, 완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나타났으며, 수요자를 파산에 이르게까지는 하지 않는 대신 채무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조금씩 장시간에 걸쳐 이익을 획득하는 교묘한 수법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한 층 더 음성화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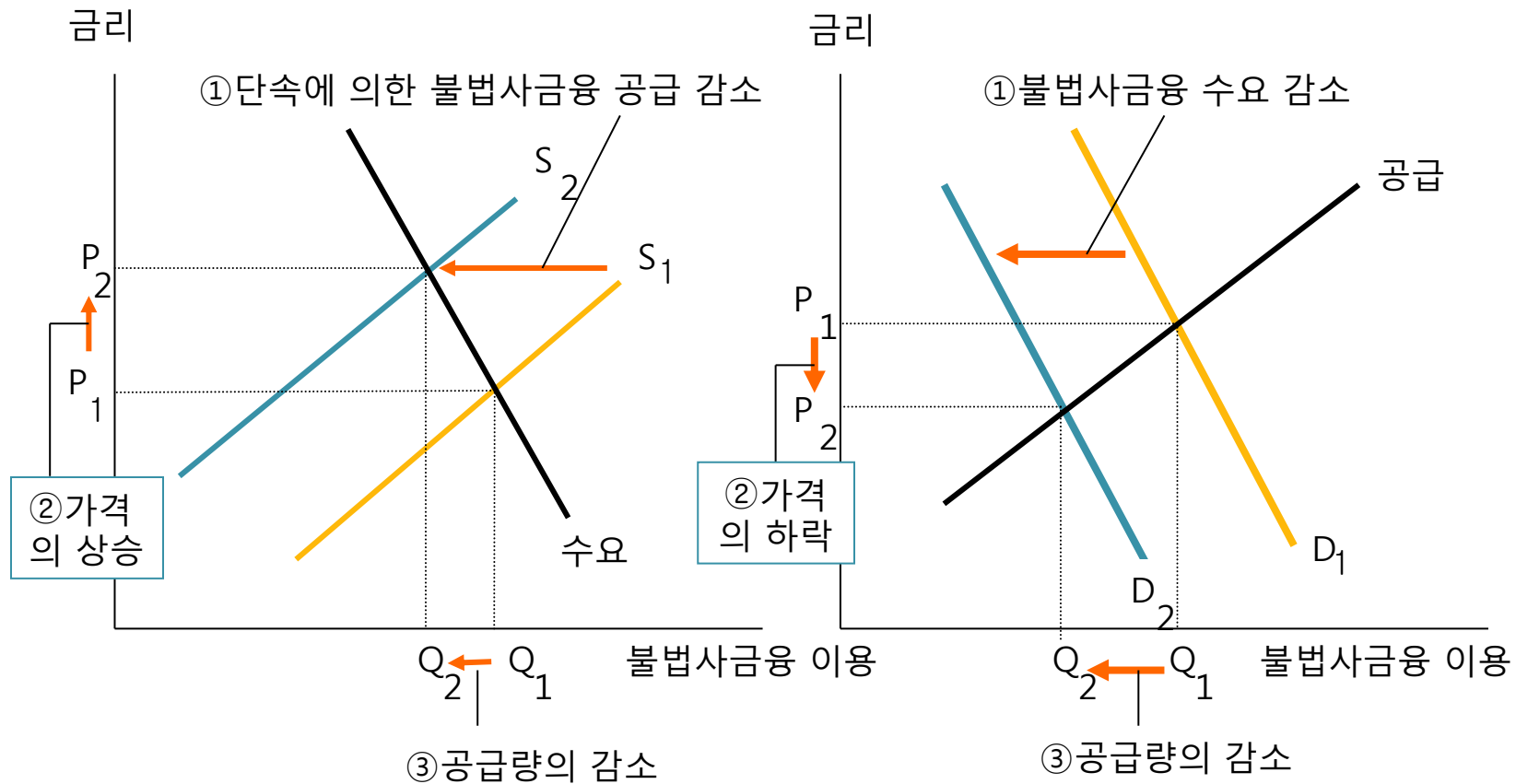
확대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의 유형

- ① 소프트한 불법사금융업자
- ② 친구나 지인으로 위장한 불법사금융업자
- ③ 신용카드 현금화업자
- ④ 금이나 보석 등의 환금상법
- ⑤ 간주대금업자

강경한 추심행위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불법사금융업자는 쇠퇴 경향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 소비자금융사들을 통하여 조달되어 온 자금 수요를 경찰의 단속으로 억제하려고 해도 불가능할 것이며, 코스트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 만약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지불하는 총액은 불법사금융이 감소하더라도 증가할 것이다.
-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다.

시장축소가 마크로경제에 미치는 영향(1)

신용축소가 확대되어
경기의 심각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개정 대금업법이 성립된 2006년과 지금은
경기동향이 완전히 상이하다.

시장축소가 마크로경제에 미치는 영향(2)

모델

소비함수 : $C = a_0 + b_1Y + b_2CF + b_3C_{t-1}$

정의식 : $Y = C + Z$

C : 민간 최종소비지출, Y : GDP, CF : 소비자금융 신용공여액,

Z : 기타 총수요(투자+정부 최종 지출+수출-수입),

C_{t-1} : 1기전의 민간 최종소비지출

1984년부터 2004년까지 21년간의 연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3 단계 최소 2승법을 이용하여 분석

소비자금융 신용공여액이 감소할 경우
GDP가 어느 정도 감소할지를 시뮬레이션

	소비자금융 신용공여액의 감소				
	10%	20%	30%	40%	50%
GDP 감소분	4,577억엔	9,154억엔	1조3,731억엔	1조8,307억엔	2조2,884억엔
성장율 감소분	0.079%	0.158%	0.237%	0.316%	0.395%

출처:와세다대학교 소비자금융 서비스 연구소

산업연관표에 의한 상한금리규제 및 총량규제의 효과

- 산업연관 분석(최종 수요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 및 특정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
- 상한금리의 영향을 명목 GDP 성장률로 환산하면, 2006년도에 마이너스 0.22%, 2007년도에 마이너스 0.49%, 2008년도에 마이너스 0.45%
-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 실업자수는 2006년도에 약 15만 명, 2007년도에 약 34만 명, 2008년도에 약 32만 명
- 총량규제의 영향 면에서는 명목 GDP를 0.38% 인하시켜 약 23만 명의 실업자를 배출한다.
- 정액급부금의 급부 면에서는 소비성향이 63%일 때, 명목 GDP를 0.31% 인상시키고 신규 고용자를 약 19만 명 창출했다.

가토 아키라와 이다 타카오씨의 '개정 대금업법과 일본의 GDP'
퍼스널 파이낸스 학회 제11회 전국대회, 2010년 10월 2일, 삿포로 대학

3.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는 정책 논의

- 법 제정 및 개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효과나 영향을 검증하면서 입법작업에 임해야 하는데 이러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중채무 방지만을 목적으로 할뿐 국민적 이해(利害)와 같은 관점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대금업체는 악이라고 하는 이미지:다중채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금업체는 고리를 전제로 누구에게나 대출을 실시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악질업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 약자보호가 절대 정의
-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과 과다한 대출 권유를 비판
- 대금업체의 존재 의미에 대해 무지하다.
 - ①소비자의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말하자면 자금을 융통하는 역할
 - ②현시점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 수요 요인으로 소비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구매력을 발생시키는 유효수요의 창출이라고 하는 역할

1970년대 '샐러리맨금융(사라킹) 문제' → 대금업규제법 시행에 의한 규제 강화와 금리 인하

1999년~ '상공론 문제' → 법개정에 의한 규제 강화와 금리 인하

2000년~ '불법사금융 문제' → 법개정에 의한 규제 강화



'대금업체=악'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인 양성

대금업에 대한 이미지

- ① 일본의 총인구 1억 3천만 명 중 다중채무자는 230만 명이나 된다. 법개정은 사회적 요청이다.
- ② 다중채무는 자살이나 파산의 주된 원인이다.
- ③ 대출을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까지 대출을 하고 있다(과잉 대출)
- ④ 이 금리로 사업이 성립될 리가 없다.
- ⑤ 과불금 반환 청구로 다중채무는 해결할 수 있다.
- ⑥ 총량규제와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업계뿐이다.
- ⑦ 개정 대금업법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 ⑧ 법개정 이후, 은행이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무담보론을 제공한다.

4. 지정신용정보기관제도의 도입

- 개정 대금업법은 채무자의 대출총액을 제한하여 다중채무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량규제를 도입하여 개인 고객 등에게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용정보기관(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용정보기관을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다)의 신용 정보를 이용하여 상환 능력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개인 대상 대출을 실시하는 대금업체는 지정신용정보기관에 가입하여 정보를 조회하고 등록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적어도 대금업체의 범위 내에서는 정보의 확충이 될 것이다.
- 금융기관은 대상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폐업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정보나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사비사법) 등, 법의 대상이 아닌 업체에 양도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정'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행정은 신용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다중채무 방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용정보기관을 이용한 국가의 시장 통제이며, 건전하지 않은 채무자는 국가가 관리하려는 것으로 금융정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정책에 가깝다. 다중채무자 문제의 해결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를 "저소득자는 대출을 받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주의 경제 원칙에 위배된다.

지정신용정보기관제도의 도입(2)

- 지정신용정보기관의 경우 검열이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의 이용이 행정의 재량에 맡겨짐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대금 채권과 관련된 신용정보의 수집·관리·제공만이 신용정보기관의 본업으로 여겨져 그 외의 신용정보에 관한 업무(예를 들면 스코어링·서비스)는 승인사항으로 사실상 행정의 재량에 맡겨진다.
- 일본에서는 소비자 신용 시장의 확대 그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소비자 신용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신용정보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중채무 방지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전한 자금 수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관의 수반도 필요하다. 다중 채무자를 줄임과 동시에 보다 많은 자금 수요자에게 공정하면서 공평한 대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기관은 그 사회적 역할을 완수하고 국민경제에 공헌해 나갈 수 있다. 신용정보기관은 개인 대상 금융시스템에 불가결한 인프라로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해야 할 것이다.

5. 대금업체의 늦깎이 대응

- 규모 위주로 성장을 해온 대금업계는 시장 성장이 멈추었을 때의 안정적인 경영으로 기어 체인지를 하는 것이 늦어졌다. 이로 인해 대금업체는 무분별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 대금업무계는 사업에 드는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대출 1건당 코스트를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 재무의 안정화, 말하자면 저비용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다.
- 소비자금융은 소액이면서 완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잔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신규 용자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막으면 축소된 영업자산에 대한 불량자산 비율이 높아져 버린다.
- 많은 업체가 규모를 지향하게 되면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을 실시하는 업체가 일부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이전에 상환능력의 범위라고 확신하고 대출을 실시한 업체에서도 불량채권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는 과잉 대출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 대금업협회가 업계의 실태와 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예를 들면 협회는 스스로를 중소기업의 대표라 칭하면서 대기업을 협회의 대표로 하지 않았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규제 시책을 취할 수가 없었다(예를 들면 상환이 장기화되지 않기 위한 최저 상환액 등에 관한 룰)

배워야 할 5가지

1. 대금업 등록 요건의 엄격화
2. 대금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정비
3. 감독행정의 강화
4. 생활재건지원 카운슬링의 강화
5. 은행과의 자본 및 업무 제휴

1. 대금업 등록 요건의 엄격화

- 개정 대금업법에서는 대금업체의 재산적 기초요건을 인상했다.
(순 자산액을 5,000만 엔까지 인상)
- 대금업무취급주임자의 배치 의무(등록제를 도입하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행위는 대금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며,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다.
- 하지만 불법사금융업체를 배제하고 대금업 시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금융을 제공하는 업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 이전 법의 경우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순자산액은 300만 엔이었다.
- 1970년대에 '사라킹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법적인 규제가 없고 행정 면에서의 감독도 엄격하지 않아 폭력조직이 관여한 업체가 혼재해 버렸다. 1983년에 대금업 규제법 시행되기 전에는 업체수가 20만 이상이나 되었지만 이 중에는 상당히 의심스런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00년 6월에 상한금리가 인화된 후에 불법사금융업체의 증가가 시작되었지만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하여 고객을 확보할 때 신뢰를 받기 위해 등록을 실시하는 '등록 위법업체'가 증가했다.

2. 대금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정비

- 1999년 5월 금융회사가 용자 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발행을 인정하는 '논뱅크 사채법'이 시행
- 1993년에는 프로미스, 산요신용판매, 아코무 3사가, 1996년에는 다케후지, 1997년에는 아이후르가 주식의 점두공개를 실시했으며, 이 후 각 사가 도쿄증권거래소의 일부 시장에 상장을 했다. 준 대기업급인 닛신, 싱키, 크레디아, 아스 등도 연이어 주식을 공개했다.
- 대금업체의 자금 조달 다양화 및 탄력화에 의해 대출금리가 저하되었다.
- 상장함으로써 시장에서 무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과잉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 어떤 회사일지라도 상장을 하면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법령 준수 수준이 높아진다.

3. 감독행정의 강화

- 개정 대금업법에서는 법의 명칭을 '대금업법'이라고 개정함과 아울러 행정의 감독권한 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자율규제기관(일본대금업협회)을 설치하여 대금업협회에도 감독권한을 갖게 하는 등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감독이 강화되었다.
- 행정처분의 강화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위반행위를 한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 규제 위반에 대해 기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에 더불어 업무개선명령을 도입했다.
- 모든 대금업체에게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 대금업협회를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 하였으며, 광고의 빈도나 과잉대출방지 등에 대한 자율규제기본규칙의 제정을 의무화하였다.
- 자율규제기본규칙을 협회원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업협회에 의한 제재 권한이 행사된다.

감독행정의 강화(2)

- 은행의 면허제와는 달리 대금업은 등록·신고제이다.
- 등록 및 신고를 하는 곳도 영업소재지가 동일 도도부현 내일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두 곳 이상의 도도부현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청의 지방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에 함으로써 사실상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
- 금융청은 대금업체를 은행 주체의 금융시스템의 극히 일부를 보완하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 도도부현의 경우도 논뱅크를 관할하는 상공부 중소기업과(또는 금융과)가 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이며, 단지 등록 신청을 접수 받는 수준의 상황이었다.
- 금융행정 면에서도 감독 권한이 약한 대금업계가 소비자금융 시장의 메인 주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 점이 다중채무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여겨졌다.

4. 생활재건지원 카운슬링의 강화

-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상담 창구를 재검토하여 실제로 도움이 될만한 인프라로 성장시켜나가야 한다.
-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나서야 상담창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른 단계에서 간편하게 액세스 할 수 있는 창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상담창구가 제휴를 통하여 노하우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채무조정뿐만이 아니라 생활재건으로 이어지는 노하우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일본대금업협회의 상담센터가 심리 카운슬링을 포함한 다중채무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상담창구의 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소비자금융회사가 '머니 어드바이저 제도' 등과 같은 카운슬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5. 은행과의 자본 및 업무 제휴

- 소비자금융회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개인 대상 무담보론 서비스를 실시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2005년 5월에 프로미스가 구산와은행과 어플러스와 함께 '모빗트'를, 같은 해 6월에 산요신용판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일본생명보험, 에이엠피엠 재팬이 '애트론'을, 2001년 8월에 아코무와 미쓰비시도쿄파이낸셜 그룹이 '도쿄 미쓰비시 캐쉬 원'을, 2001년 1월에 아이후르와 스미토모 신탁은행이 사업자 대상 론회사인 '비지네크스트'를 설립.
- 소비자금융회사가 은행의 개인 대상 무담보론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실시하는 업무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
- 업무제휴 뿐만 아니라, 자본 투자를 포함한 업무·자본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3월, 아코무는 미쓰비시 도쿄 파이낸셜 그룹(MUFG)으로부터 기발행주식의 15%의 출자를 받아 들여 업무·자본 제휴를 하는 것을 발표(현재는 40%). 같은 해 6월, 프로미스도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SMFG)으로부터 20%를 상한으로 하는 출자를 받아 들이는 자본·업무 제휴를 발표.
- 실질적인 여신심사는 소비자금융회사가 실시하고, 이익은 소비자 금융회사와 은행에서 절반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금융회사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이유로는 신용정보센터의 고객 정보와 그 정보를 파악하여 독자적인 분석을 하는 여신 노하우에 있다.
- 소비자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은행과의 제휴 전략에 의해 자금 조달면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창구나 브랜드력을 사용한 판매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